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방재종합대책 계획수립 및 총괄 조

정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민방위과의 소관 사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승계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총무국)①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사회진흥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 ②~④(생 략) ⑤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도시방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6조(총무국)①민방위재난관리과..... ②~④(현행과 같음) ⑤민방위재난관리과 1.~4. (현행과 같음) 5. 도시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16.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2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1995년 12월 15일
 - 다. 상정일자: 제35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95.12.16.)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이춘기
 - 가. 개정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 정원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구본청 정원의 총수 905명을 5명 증원하여 910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 직속기관(보건소)정원의 총수 71명을 5명 증원하여 76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연구·기술분야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장의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승인이 시달되고 95년 11월 11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제장1명과 교통행정과 소속 교통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구본청정원이 905명에서 910명으로 5명 증원되고,
 -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임전문직 가급인 내과의사 1명과 나급인 치과, 영유아실, 결핵실, 성병진료실 근무 의사 4명이 포함되어 71명에서 76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성환 위원): 한시적인 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은 몇 명인가?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교통전문직 4명, 의사 5명으로 9명임
- 질의요지(김성환 위원): 본 개정조례로서 정원으로 포함되는 9명에 대해서는 어떤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가?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현재 교통전문직 4명중 전문직 다급 1명은 7급, 라급 1명은 8급, 마급 2명은 9급, 의사는 가급 1명은 5급, 나급 4명은 6급의 대우를 하는데 종전과 동일하며 다만 9명에 대해서 정원의 관리를 해오던 것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원에 포함 관리하려는 것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6급 대우를 하는 의사의 보수는?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실제 보수액이 6급 공무원의 보수보다 많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1995. 12. 15.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 정원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중 구분청 정원의 총수 905명을 10명 증원하여 915명으로 함(안제2조제1호)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8.4. 법률제4959호)제15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1995.5.16. 대통령령제14647호)제13조, 제21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905명"을 "9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현행과 같음)
1. 구 본청(구청): 905명	1. 구 본청(구청): 915명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